세이셸 (Seychelles)

◉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 보편적 / 사회보험	세이셸 거주 자국민 / 비정규직 포함 자국민 근로자	세이셸 거주 자국민 / 비정규직 포함 자국민 근로자	-
사회보험 보험료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2% / 4% / 2%	3% / 6% / 3%	보험료율 인상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없음	없음	-
노령연금 수급요건 보편적 / 사회보험	63세 이상, 퇴직일 직전 5년 세이셸 거주 / 60세 이상으로 정상퇴직연령 전 사회보험 10년 이상 연속납부, 2010년 6월 30일 전 보편적 제도에 20년 이상 납부 또는 정상퇴직연령 전 둘 중 하나 제도에 20년 납부	63세 이상, 퇴직일 직전 5년 세이셸 거주 / 60세 이상으로 정상퇴직연령 전 사회보험 10년 이상 연속납부, 2010년 6월 30일 전 보편적 제도에 20년 이상 납부 또는 정상퇴직연령 전 둘 중 하나 제도에 20년 납부	-
사회보험 노령연금 지급률	퇴직 전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비율로 지급	가입자 월평균소득 x 납부연수 x 평균임금상승률 x 이자율	산식 일부 변경
일시금	근로자 및 사용자 납입 보험료 + 가산이자	근로자 및 사용자 납입 보험료 + 가산이자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○ 최초법 : 1971년(적립기금) 및 1987년(사회보장)
○ 현행법 : 2005년(사회보험) 및 2010년(보편사회보장)

2 제도형태

○ 보편적 및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○ 보편적 : 세이셸에 거주하는 자국민

○ 사회보험 : 비정규직 포함 자국민 근로자

4 재원조달

○ 가입자
- 보편적 : 없음
- 사회보험
  - 월 소득의 3%
  - 정상퇴직연령에 도달한 후에는 없음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없음

○ 자영자
- 보편적 : 없음
- 사회보험
  - 월 소득의 6%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없음

○ 사용자
- 보편적 : 없음
- 사회보험
  - 월 임금지급총액의 3%
  - 정상퇴직연령에 도달한 후에는 없음
  - 사용자 납입 보험료는 현금 질병 및 출산급여, 산재급여의 재원으로도 사용

○ 정부
- 보편적 : 총 비용
- 사회보험 : 없음, 사용자로서 기여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- 노령연금(보편적)
  - 63세 이상으로 퇴직일 직전 5년 이상 세이셸 거주(특정 조건 하에 거주요건 면제 가능)
  - 부양가족수당(소득조사) : 특정 조건 하에 피부양 자녀와 배우자, 가입자를 돌보던 자, 또는 기타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피부양 성인에 대해 지급
  - 가족소득이 법정 가족최저생계유지 수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
  - 보편적 노령연금은 해외 지급 불가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60세 이상으로 정상퇴직연령 도달 직전 사회보험제도(세이셸연금기금(SPF))에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, 2010년 6월 30일전 보편적제도(사회보장기금(SSF))에

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, 정상퇴직연령 도달 전 두 개의 제도 중 하나에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
  - 특정 조건 하에 고용은 지속될 수 있음
  - 사회보험 노령연금은 해외 지급 가능
- 이주수당(사회보험)
  - 정상퇴직연령보다 어리고 영구적으로 국외이주 시 지급

○ 장애연금
- 장애연금(보편적)
  - 최소 75% 이상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되고 다른 급여 수급권이 없으며 최소 5년 동안 세이셸에 거주한 자(특정 조건 하에 거주요건 면제 가능)
  - 최소 6개월 이상 질병급여 수급 후부터 연금지급
  - 부분장애연금 : 50% 이상 75% 미만의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되고 최소 5년 동안 세이셸에 거주한 자(특정 조건 하에 거주요건 면제 가능)
  - 가족소득이 법정 가족최저생계유지 수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
  - 의료위원회가 근로능력상실을 판정하며 급여지급기간을 결정함
  - 부양가족수당(소득조사) : 특정 조건 하에 피부양 자녀와 배우자, 가입자를 돌보던 자, 또는 기타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피부양 성인에 대해 지급
  - 가족소득이 법정 가족최저생계유지 수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
  - 보편적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중단되며 동일한 금액의 보편적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  - 보편적 장애연금은 해외 지급 불가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60세 미만으로 80% 이상 근로능력상실로 판정
  - 시한부 질병으로 진단받은 가입자는 사회보험 장애연금 대신 사회보험 장애청산금을 선택 지급받을 수 있음
  - 세이셸연금기금(SPF)가 임명하는 의료위원회가 근로능력상실을 판정하며 급여지급기간을 결정함
  - 사회보험장애연금은 해외 지급 가능
- 장애청산금(사회보험)
  - 사회보험 장애연금 수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시한부 질병으로 진단받아 사회보험 장애연금 대신 사회보험 장애청산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

○ 유족연금
- 유족연금(보편적)
  - 사망 전 최소 5년 이상 세이셸 거주
  - 수급권 있는 유족은 45세 이상 또는 16세 미만(학생인 경우 25세 미만)의 피부양 자녀를 양육하는 미망인, 피부양 홀아비 및 그리고 고아가 있음
  - 배우자 유족연금은 재혼 또는 동거 시 중단
  -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망인에게는 근로일 기준 최대 까지 제한된 급여 지급

- 부양가족수당(소득조사) : 특정 조건 하에 피부양 자녀와 배우자, 가입자를 돌보던 자, 또는 기타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피부양 성인에 대해 지급
- 가족소득이 법정 가족최저생계유지 수준을 초과 할 수는 없음
- 보편적 유족연금은 해외 지급 불가

• 유기아동급여(보편적)
- 15세 이상으로 부모에게 유기되었으며 전업으로 학생 또는 훈련과정을 수료중인 경우 지급

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
- 사망 전 사회보험제도(세이셸연금기금(SPF))에 10년 이상의 지속 납부이력이 있거나 동 제도와 보편적제도(사회보장기금(SSF)) 둘중 하나의 제도에 20년 이상 납부이력이 있는 경우
- 수급권 있는 유족은 피부양 유족 배우자 또는 최소 7년 동안 사망자와 동거한 자 및 18세 미만 자녀(전업 학생의 경우 26세 미만)
- 유족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가입자의 사망당시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었을 경우 급여 미지급
- 유족배우자는 최소 5년 이상 세이셸에 거주하였어야 함(특정 조건 하에 거주요건 면제 가능)

• 유족청산금(사회보험)
- 사망자가 정상퇴직연령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사회보험 노령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한 경우
- 수급권 있는 유족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(전업 학생의 경우 25세)이며, 없을 경우 지명된 유족에게 지급

• 유족급여(사회보험)
- 사망자가 연금수급자로 사망한 경우
- 수급권 있는 유족은 배우자, 피부양 자녀 및 중증장애로 판정되고 사망자에게 온전히 의존하였던 자가 있음
- 세이셸연금기금(SPF)가 임명하는 의료위원회가 장애정도 판정
- 사회보험 유족급여는 해외 지급 가능

• 장제비(보편적)
- 장제비를 지급한 자에게 지급되며, 사망 이후 6개월 내로 청구되어야 함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(보편적)
- 월 5,250 rupees
- 부양가족수당(소득조사) : 수급권 있는 자녀 당 월 1,230 rupees(성인은 1,380 rupees)
- 급여는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평가 및 조정

• 노령연금(사회보험)
- 연금월액은 가입자의 월평균소득 x 납부연수 x 평균임금상승률 x 이자율
- 월평균소득은 퇴직 직전 9년에 대한 가입자의 소득 기준
- 이자율은 1.59% (2017년 기준)

- 임의납부된 보험료는 급여산정에 포함되거나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환급 가능
- 최대연금월액은 75,750 rupees

• 노령청산금(사회보험)
-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 + 가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이자율 4.81% (2018년 기준)

• 이주수당(사회보험)
-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 + 가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이자율 4.81% (2018년 기준)

○ 장애연금

• 장애연금(보편적)
- 월 5,250 rupees
- 부분장애연금(소득조사) : 감액연금 지급
- 부양가족수당(소득조사) : 수급권 있는 자녀 당 월 1,230 rupees(성인은 1,380 rupees)
- 장애연금 및 부양가족수당의 합산 최고액은 장애발생 전 가입자 소득의 80%
- 급여는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평가 및 조정

• 장애연금(사회보험)
- 연금월액은 가입자의 월평균소득 x 납부연수 x 평균임금상승률 x 이자율
- 이자율은 1.59% (2017년 기준)
- 최대연금월액은 75,750 rupees

• 장애청산금(사회보험)
-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 + 가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이자율 4.81% (2018년 기준)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(보편적)
- 배우자연금 : 최대 1년간 수급권 있는 유족 배우자에게 월 2,480 rupees 지급(특정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)
-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유족 배우자의 경우 급여는 영업일 기준 최대 20일까지 지급
- 부양가족수당(소득조사) : 수급권 있는 자녀 1명 당 월 1,230 rupees(성인은 1,380 rupees)
- 고아연금 : 수급권 있는 고아 1명 당 월 1,300 rupees(완전고아는 월 1,540 ruppes)

• 유기아동급여(보편적)
- 각 완전 고아에게 월 1,540 rupees 지급

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
- 배우자연금 : 수급권 있는 고아가 없는 경우,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80%를 일생동안 배우자에게 지급(배우자가 사망자보다 10살 이상 젊을 경우 70%). 수급권 있는 고아가 있는 경우, 사망자 연금의 최대 50% 지급, 사망자가 유족 자녀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배우자 연금은 감액되나 사망자 연금의 최소

25% 이상 수급 가능

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최소 40%가 수급권 있는 고아에게 지급됨. 사망자가 유족 자녀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사망자 연금의 최대 75%까지 지급됨. 완전 고아에게는 80%. 급여는 모든 수급권 있는 고아에게 균분 지급, 자녀의 보호자에게 지급

• 유족청산금(사회보험)
  -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 + 가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  - 유족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을 경우, 지정된 수급권자 또는 부양가족에게 지급됨
  - 이자율 4.81% (2018년 기준)
• 유족급여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 1개월 치를 일시금으로 지급
• 장제비(보편적)
  - 2,000 rupees를 일시금으로 지급
  - 급여는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평가 및 조정

7 관리운영기관

○ 가족부(Ministry of Family Affairs)
• 보편적제도 감독 제공
• http://www.family.gov.sc

○ 사회보호청(Agency for Social Protection)
• 재정부(Ministry of Finance)가 지정하는 평의원회에 의해 감독받으며, 보편적제도(사회보장기금) 운영
• http://www.asp.gov.sc

○ 세이셸연금기금(Seychelles Pension Fund(www.pensionfund.sc))
• CEO 및 3자 평의원회에 의해 감독,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
<2019년 ISSA 자료>